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이 개정(법률 제21410호, 2026. 2. 27. 공포, 2026. 8. 28. 시행)됨에 따라, 종사자 협회 설립, 설립인가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등(안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

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발기인, 설립 동의 인원 및 회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함

나.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 정관의 내용 등(안 제36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

종사자협회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설립 목적, 소재지, 업무에 관한 사항 및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, 종사자협회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함

다.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 받은 기존 종사자협회 인정(부칙)

다른 법령(민법)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종사자협회는 개정규정에
따른 종사자협회로 인정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7. 13. ~ 2026. 7. 27)

3) 행정규제 :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 제목 중 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”을 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”로 하고, 제36조제1항 중 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(이하 “소화물배송대행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(이하 “사업자협회”라 한다)”로 하며, 본문 중 “소화물배송대행협회”를 각각 “사업자협회”로 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 설립 등) ① 법 제40조의 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(이하 “종사자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,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

1.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·날인할 것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중 5개 이상의 시·도에 분산된 총 400인 이상 회원의 설립 동의를 얻을 것

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과 회원은 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

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.

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
5. 임원에 관한 사항
6. 업무에 관한 사항
7.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해산에 관한 사항
10. 그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종사자협회에 대해서는 제36조의2의 개정

규정에 따른 종사자협회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6조(<u>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</u> 의 설립 등) ① 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<u>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관련 협회</u> (이하 “소화물배송대행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립하려는 <u>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</u>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,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.	제36조(<u>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</u> 의 설립 등) ①----- <u>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협회</u> (이하 “사업자협회”라 한다)----- <u>사업자협회</u> -----
② <u>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</u>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② <u>사업자협회</u> -----
1. ~ 10. (생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라 <u>소화물배송대행협회의</u>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	③ -----사업자협회-----
<신설>	-----.
	제36조의2(<u>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협회의</u> 설립 절차 등) ① 법 제4

0조의2제3항에 따라 소화물배송대
행서비스종사자협회(이하 “종사
자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하려는 경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
갖추어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, 국
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
청해야 한다.

1.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
작성하여 서명·날인할 것

2.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
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
“시·도”라 한다) 중 5개 이상
의 시·도에 분산된 총 400인
이상 회원의 설립 동의를 얻
을 것

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과 회원은
협회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
으로 1년 이내 법 제2조제4호
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
비스인증사업자 또는 법 제2조
제5호에 따른 영업점과 운송
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
체결하고 3개월 이상 종사한
사람으로 한다.

③ 종사자협회의 정관에는 다음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<신 설>

1. 목적
 2. 명칭
 3. 사무소의 소재지
 4.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
 5. 임원에 관한 사항
 6. 업무에 관한 사항
 7.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
 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9. 해산에 관한 사항
 10. 그밖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0조의
2제3항 전단에 따라 종사자협
회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
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
홈페이지 또는 관보에 공고해
야 한다.

< 부 칙 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8
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사자협회 설립에 관한 경
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
령에 따라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
리법인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 관
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

<u>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</u> <u>단체는 법 제40조의2의 개정 규정</u> <u>에 따른 종사자협회로 본다.</u>
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	
연 락 처	(044) 201 - 4158